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 既 공고('17.1.6)된 시험일정 일부 변경 :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1 **선발인원 : 총 295명**

가. 선발예정직급 : 지방소방사

나. 선발분야 :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구 분	합계	소방전공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 전역	비 고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 계	295	82	72	10	165	142	23	48	
서울	16	8	7	1	8	7	1	-	
대구	17	-	-	-	17	14	3	-	
인천	50	-	-	-	50	50	-	-	
광주	20	5	5	-	15	13	2	-	
대전	14	6	6	-	8	7	1	-	
울산	25	10	8	2	10	8	2	5	
세종	2	-	-	-	2	2	-	-	
경기	60	20	18	2	30	20	10	10	
강원	7	-	-	-	-	-	-	7	
충북	6	2	2	-	2	2	-	2	
전북	20	12	10	2	5	4	1	3	
경북	30	10	9	1	8	7	1	12	
경남	22	6	4	2	10	8	2	6	
창원	6	3	3	-	-	-	-	3	

2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	3. 3.(금) 09:00 ~ 3. 8.(수) 18:00	
필기시험	3. 27.(월) 14:00	4. 8.(토) 10:00(60분)	4. 27.(목) 14:00
체력시험	4. 27.(목) 14:00	5. 15.(월) ~ 5. 19.(금) (개인별 체력시험 실시일에 서류전형 관련서류 직접 제출)	5. 26.(금) 14:00
서류전형	-	5. 22.(월) ~ 5. 30.(금)	6. 14.(수) 14:00
인·적성검사	5. 26.(금) 14:00	6. 7.(수) ~ 6. 9.(금) (개인별 인·적성검사 실시일에 신체검사서 직접 제출)	-
신체검사	-	종합병원에서 개인별로 실시 후 인·적성 검사일에 제출 (세부내용 VI. 신체검사 참조)	7. 5.(수) 14:00
면접시험	6. 14.(수) 14:00	6. 19.(월) ~ 6. 23.(금)	7. 5.(수) 14:00

3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가. 공통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1976. 1. 1. ~ 1997. 12. 3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자
-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2)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3)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참고

4)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1)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등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응시 원서접수일 현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함

3)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다.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3.(금) 09:00 ~ 3. 8.(수) 18:00 / 6일간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119gosi.kr>)에서 접수

다.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5,000원)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 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은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자격증 등 가산점은 없음

- 원서 접수시 본인이 직접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산점 표기

※ 가산점 반영비율(붙임7 참고)

- ▷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체력·면접시험 각 단계별 만점의 5%, 10%
- ▷ 의사상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5%

☞ 취업지원대상 적용 가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각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음(선발 분야, 시·도 및 남·여 구분)

☞ 의사상자 적용 가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선발 분야, 시·도 및 남·여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가산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이며, 원서접수 이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필기시험 당일 시험운영본부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바. 유의사항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응시표는 2017. 3. 27.(월)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응시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응시일에 지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이미지 파일로 전환(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파일 첨부 ※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1) 시험일시 : 2017. 4. 8.(토) 10:00 ~ 11:00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입실 불가)

2) 시험장소 : 충남 천안지역('17. 3. 27. 별도공고)

3) 시험과목 : 총 3과목

구 분	시험과목	비고
①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②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국어, 소방학개론, (생활)영어	
③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세부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생활영어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4) 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객관식 4지 1선택형) / 문항당 5점(100점 만점)

5) 합격자 발표 : 2017. 4. 27.(목) 14: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필기시험 합격기준>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조회 : 4. 28.(금) ~ 5. 8.(월) / 원서접수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나. 제2차 시험(체력시험)

1) 시험기간 : 2017. 5. 15.(월) ~ 5. 19.(금)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입실 불가, 시험시간 별도 공고)

2)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센터

3)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4)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5)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

※ 도핑테스트 안내문,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붙임 5참조

6) 합격자 발표 : 2017. 5. 26.(금) 14:00

<체력시험 합격기준>

총 6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처리(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합격취소)

다. 서류전형

1) 제출일자 : 개인별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제출

2)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3)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의무소방원 전역 확인서 등

※ 응시연령 상한 적용 대상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병역사항 기재)

4) 합격자 공고 : 2017. 6. 14.(수) 14:00 면접시험 일정 공고 시

라. 제3차 시험(신체검사)

1) 대상/장소 : 체력시험 합격자 / 종합병원(붙임 10 참조)

2) 제출기한 : 개인별 인·적성검사 실시일(6. 7. ~ 6. 9.)

3) 검사방법 : 응시생 본인이 직접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수검하고, 인·적성검사 실시일에 직접 제출

* 단, 신체검사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인·적성검사 최종일(6. 9.) 18:00까지 인편 제출 가능

* 검사기간은 인·적성검사 최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양식은 개정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신체검사 결과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결과 반영

<신체검사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별표5에 의거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 합격처리

☞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3에 의함

마. 인·적성검사

- 1) 검사기간 : 2017. 6. 7.(수) ~ 6. 9.(금) / 3일간
- 2)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 3)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4) 검사방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바. 제4차 시험(면접시험)

- 1) 시험기간 : 2017. 6. 19.(월) ~ 6. 23.(금) / 5일간
- 2)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 3) 시험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4) 시험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 5) 합격자 발표 : 2016. 7. 5.(수) 14:00 최종합격자 발표로 같음함

<면접시험 합격기준>
 1단계와 2단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결정.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시 : 2017. 7. 5.(수)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증명서 발급 : 2017. 7. 5.(수) 이후 최종합격자 중 발급희망자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은 기상악화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 시험(필기·체력·신체·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졸업증,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제1차 필기시험 유의사항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2017. 4. 28(금) ~ 5. 8.(월)까지(5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제2차 체력시험 유의사항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크 신발 착용 불가)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제3차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병원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붙임 10 참조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 ~ 18:00)

- ◆ 채용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7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응시표 출력 문의 : ☎ 043-219-1320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6.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9. 소방관련학과 현황 1부
 10. 전국 종합병원 목록 1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격기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기타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참고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1-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 · 트리빠노쪼마병 · 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축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붙임 4-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p>악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근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사전준비사항

- 시료채취실(대기실, 행정실, 화장실 등 시료채취 별도 공간) 확보
- 시료채취 책임관 지정(소방위 이상)
- 시료채취 용기(요비중계) 등 준비
- 시료보관용 박스 또는 냉장고 등 준비

□ 처리절차

- ① 채용시험 공고문에 도핑테스트 실시 고지 및 안내(안내문 배부)
- ② 원서접수 시 동의서 징수
- ③ 시험진행절차에 의하여 필기합격자 체력검정 실시
- ④ 도핑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체력시험(전) 공개적으로 선정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체력시험 대상자의 7%이내

{예: 추천함에서 추천자를 추천한 후 추천자로 선정된 응시자가 추천하는 방식(번호뽑기 등)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⑤ 도핑대상자 시료수집책임관과 동행하여 시료채취



시료채취통에 약 90ml 소변 채취

- ⑥ 검사용 용기에 소분



- 1) A병 : 50ml, B병 : 40ml 소분
- 2) 시료봉인후 일시, 장소, 피채취자, 채취자 피채취자 날인이 되어있어야 함

⑦ 검사용 용기(A,B)를 봉인봉투에 포장, 발송준비



⑧ 소변 채취통에 잔여분으로 뇨비중 검사



⑨ 뇨비중 검사후 적정비중(1.005)이하인 경우 시료 재 채취

⑩ 채취한 소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택배 배송 및 문서작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마약분석과(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번지)

※ 우체국 택배 이용하며, 아이스팩으로 보냉조치 후 이송

※ 문서작업 : 도핑인원 1인당 1건의 문서 발송(중요)

⑪ 처리기한 : 14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수 후)

□ 기타사항

① 처분 및 이의신청 등

- 비정상분석결과시 응시자에게 서면 통보 및 B시료 검사 등 조치
- 부정행위로 처분 시, 이의신청 제기

② 약물검사시 마약류 성분 검출시, 경찰에 수사 의뢰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필기시험 시 휴대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운영본부로 증빙서류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대상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필기시험 시 휴대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운영본부로 증빙서류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대상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 한다. 다만,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6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전상군경·전몰군경(군, 경찰), 공상군경·순직군경(군, 경찰, 소방), 보국수훈자(군인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세부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참고

2.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애국지사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애국지사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자녀

2.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3.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재해부상군경(군인, 경찰·소방) 및 재해부상공무원
 - 나. 재해사망군경(군인, 경찰·소방)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재해부상군경(군인, 경찰·소방)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
 - 가.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나.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고도장애, 중증도장애)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나.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다.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 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나.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다.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나.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참고

전국 소방관련학과 현황

연번	학교(학과)	연번	학교(학과)
1	가천대학교(설비소방공학과)	31	부산과학기술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2	강원대학교(소방방재공학과),(재난관리공학과)	32	상지영서대학교(소방안전과)
3	강원도립대(소방환경방재과)	33	서영대학교(소방행정과),(소방안전과)
4	건양사이버대학교(재난안전소방학과)	34	서정대학교(소방안전과)
5	경남대학교(소방방재공학과)	35	세경대학교(소방구조구급과)
6	경민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36	세명대학교(소방방재학과)
7	경북도립대학교(소방방재과)	37	세한대학교(소방행정학과)
8	경북전문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38	순천제일대학교(소방방재과)
9	경일대학교(소방방재학과)	39	송실사이버대학교(소방방재학과)
10	계명문화대학교(소방환경안전과)	40	용인송담대학교(건축설비소방학과)
11	광주대학교(소방행정학과)	41	우석대학교(소방안전학과)
12	구미대학교(소방안전과)	42	우송대학교(소방방재학과)
13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소방학전공)	43	우송정보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14	김천대학교(소방학과)	44	원광대학교(소방행정학과)
15	김해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45	위덕대학교(건축소방안전학과)
16	대구보건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46	전남도립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17	대구한의대학교(소방방재환경학과)	47	전주대학교(소방안전공학과)
18	대원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48	창신대학교(소방방재공학과)
19	대전대학교(소방안전학과)	49	창원문성대학교(소방안전공학과)
20	대전과학기술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50	청암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21	대전보건대학교(재난건설안전과)	51	초당대학교(소방행정학과)
22	동강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52	충남도립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23	동신대학교(소방행정학과)	53	충청대학교(소방안전과)
24	동양대학교(건축소방행정학과)	54	한국국제대학교(소방방재학과)
25	동원과학기술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55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재난소방학과)
26	동원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56	혜전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27	동의대학교(소방행정학과)	57	호남대학교(소방행정과)
28	목원대학교(소방안전관리학과)	58	호산대학교(소방안전관리과)
29	부경대학교(소방공학과)	59	호서대학교(소방방재학과)
30	부산경상대학교(소방안전공학과)	60	호원대학교(소방안전관리학과)